

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 2016년 하수도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치 : 성북구 관내 전 지역
3. 목적
 - 성북구 관내 하수도준설공사장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폐기물(준설토)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임.
 - 성북구 관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준설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코자 함.
4.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6. 11. 30까지
5. 용어의 정리
 - 본 공사 건설 폐기물(준설토)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성북구청을 “발주처”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6. 폐기물처리의 범위
 - 가. 성북구 2016년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나.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준설토 폐기물의 반출 처리
7. 처리방법
 - 가.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적정한 처리시기 및 계약 기간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나. 폐기물 처리 시에는 발주처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8. 폐기물처리 업무수행지침
 -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나. 폐기물관리대장, 반출대장, 폐기물인수인계서, 반입계근표 등 원본, 처리 일별 주요 공종 촬영사진(전,중,후) 2부를 준공 시 제출한다.
- 다. 건설폐기물 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 또는 최종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한다.
- 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재활용등)는 물론 폐기물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 측정 및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현장 잔재 처리시 준설토사와 콘크리트 잔재는 구분하여 처리한다.
- 바. 본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준설토) 처리는 시공자와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와 공사일정을 맞추어 폐기물 발생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 폐기물 반출 수량 확인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반드시 감독자 또는 도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아.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처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자.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등의 동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한다.
- 차. 계약상대자는 본 준설토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준설토)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 12시간 내에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카. 계약상대자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우리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 후 일정량 이상 집하 시 시공자의 공사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건설폐기물처리장소	운 반 거 리	비 고
재활용처리업체	현장→재활용처리업체 L = 27.5km이상 적용	운반거리가 27.5km 이내시 운반거리 실측 후 정산처리

10. 설계변경 조건

- 가. 중간처리업체 까지의 운반거리가 변경(27.5km이내)되었을 때
- 나.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 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사유 발생시.
- 다.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을 시행하되, 정산 설계서의 건설폐기물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최종 설계변경된 수량 이상으로 발생된 폐기물 운반비 및 처리비는 건설 공사 도급자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1. 대금지급 방법

-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한다.
-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준공 조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 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기성대가 지급요청서 공사완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되, 공사장 최종 정산설계서 폐기물 수량 이상의 물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준설공사 도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 라.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는 도급자가 제출한 반입운반 증빙서류(폐기물 인수인계서, 반입 계근표 등)에 의거 정산 후 지급한다.

- 단위중량 : 준설토 = 1,630kg/m³,
콘크리트 = 2,300kg/m³

12. 처리결과 보고

- 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 확인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관리의 위임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14. 하도급 제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본 계약 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15. 통보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해 약

- 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 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처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처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 처리한다.

17. 예정공정표

공 종	수량	공 사 진 행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												